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54	27	1992. 12. 17	총 재 조 순

의안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7조, 제65조
법규조항

제의취지 제2금융권 유사상품과의 명칭을 기하는 동시에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복리부리를 허용하는 한편
「가계종합예금」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증합통장제도와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 예금의 명칭을
「가계당좌예금」으로 변경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 사항>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7조

- (생 략)
- ①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생 략)

④ ~ ⑥

「한국은행법」 제65조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생 략)

②

<붙임>

「금융기관의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	개	정	비																															
제1조 (생 락)	제1조 (현 행 과 같 음)																																	
제2조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① 금융기관의 수신 업무에 관련된 이자와 기타지급금의 최고율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제2조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① 금융기관의 수신 업무에 관련된 이자와 기타지급금의 최고율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u>다만, 이자의 복리계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동 최고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u>		○ 복리부리 근거마련																															
②~③ (생 락)	②~③ (현 행 과 같 음)																																	
제3조~제5조 (생 락)	제3조~제5조 (현 행 과 같 음)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1992.12.19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명시																															
<별 표>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별 표>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이</th> <th>율</th> </tr> </thead> <tbody> <tr> <td>1.~3.</td> <td>(생 락)</td> <td>(생 락)</td> <td></td> </tr> <tr> <td>4.</td> <td>가계종합예금</td> <td>(생 락)</td> <td></td> </tr> <tr> <td>5.~16.</td> <td>(생 락)</td> <td>(생 락)</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이	율	1.~3.	(생 락)	(생 락)		4.	가계종합예금	(생 락)		5.~16.	(생 락)	(생 락)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이</th> <th>율</th> </tr> </thead> <tbody> <tr> <td>1.~3.</td> <td>(생 락)</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4.</td> <td>가계당좌예금</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5.~16.</td> <td>(생 락)</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이	율	1.~3.	(생 락)	(현행과 같음)		4.	가계당좌예금	(현행과 같음)		5.~16.	(생 락)	(현행과 같음)		○ 명칭변경
구	분	이	율																															
1.~3.	(생 락)	(생 락)																																
4.	가계종합예금	(생 락)																																
5.~16.	(생 락)	(생 락)																																
구	분	이	율																															
1.~3.	(생 락)	(현행과 같음)																																
4.	가계당좌예금	(현행과 같음)																																
5.~16.	(생 락)	(현행과 같음)																																